

이 조례 및 규칙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0년 11월 2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###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

#### 1. 제정이유

- 2020.9.29. (가칭) 중구 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이 보건복지부와 협의 완료
- 어르신들의 건강·영양 증진 및 유지를 위해 안정적 식사제공, 영양관리 예방 서비스 제공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어르신 영양건강증진 사업의 정의 (안 제2조)
  - 어르신 영양 건강증진 사업의 용어 정의
- 나. 어르신 영양건강증진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 (안 제16조의2)
  - 지원내용, 지원대상, 사업 추진 방법, 관리체계 등 마련

#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(참조 : 중구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, 전화 : 3396-5366, FAX : 3396-8730, E-mail : js9032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첨부 : 1.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 1부. 끝.

##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 호

### **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**

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5. “어르신 영양 건강사업”이란 건강취약계층인 노인의 영양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를 말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 2 (어르신 영양 건강사업 지원)

- ① 구청장은 어르신의 안정적인 식사지원, 영양 관리 예방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
- ②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당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「주민등록법」 상 만65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
  1. 「기초연금법」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
  2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 3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
- ③ 어르신 영양·건강 사업은 신청에 의하여 지원하되 지급·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.
-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어르신 영양·건강관리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